

##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 30일		
신청인 (생산자 또는 수입자)	성명(법인 명칭 및 대표자성명)		생년월일		
	주소(법인 주된 사무소 소재지)		전화번호(휴대전화)		
생산지 주소					
생산예정 면적	m <sup>2</sup>	생산예정량 (수입예정량)	kg	수입국	

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4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검사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### 전문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1. 생산자가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1)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·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2)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 사본 1부 3) 전문기관에서 확인한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정기록부 사본 1부 2. 수입자가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경우: 수입면장 사본 1부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 사항	1. 토지 등기사항증명서(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임야대장 3. 임야도	

### 처리절차

